회계학개론

※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문제에서 주어진 이자율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연(年)이자율이며,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계산문제에서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의 답을 선택한다. 위의 조건 하에서 각 문제의 답지항 중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한다.

② 자산의 취득과 이와 관련된 보조금의 수취는 재무상태표에 보조금이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는지와 관계없이 현금흐름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③ 정부보조금을 인식하는 경우,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 일정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한다면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정부보조금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

⑤ 정부보조금을 인식한 후에 상환의무가 발생하면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2. ㈜세무의 20×1년도 재무제표의 상품매매와 관련된 자료이다. 20×1년도 ㈜세무의 상품매입과 관련된 현금유출액은?

기초매출채권	₩40,000	기말매출채권	₩50,000
기초상품재고액	30,000	기말상품재고액	28,000
기초매입채무	19,000	기말매입채무	20,000
기초선수금	20,000	기말선수금	15,000
기초선급금	10,000	기말선급금	5,000
매출액	400,000	매출원가	240,000
환율변동이익*	4,000		
* 환율변동이익은 매입채무에 포함된 외화외상매입금에서만 발생함			

① ₩222,000 ② ₩228,000 ③ ₩236,000 ④ ₩240,000 ⑤ ₩248,000

3.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②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보전 받는 경우, 당해 지출과 보전받는 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재량권이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은 재분류조정이 되는 기타포괄손익이다.

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유의적인 회계정책 또는 기타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

4. **㈜세무리스는 ㈜한국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2년 10월 1일 생산설비(취득원가 ₩8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를 취득과 동시에 인도하였다. 리스기간은 3년이고, 리스료는 매년 9월 30일에 수령한다. ㈜세무리스가 리스료를 다음과 같이 수령한다면, 동 거래가 20×2년 ㈜세무리스와 ㈜한국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단, 리스와 관련된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은 없고, 리스료와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일자	리스료
20×3년 9월 30일	₩100,000
20×4년 9월 30일	120,000
20×5년 9월 30일	140,000

	㈜세무리스	㈜한국
①	₩5,000 증가	₩25,000 감소
②	₩10,000 증가	₩30,000 감소
③	₩25,000 증가	₩25,000 감소
④	₩30,000 증가	₩30,000 감소
⑤	₩30,000 증가	₩50,000 감소

5. ㈜세무는 20×1년 설립이후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선입선출법이 보다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4년 초에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였다. ㈜세무가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4년도 재무제표에 비교정보로 공시될 20×3년 매출원가와 20×3년 기말이익잉여금은?

	20×1년	20×2년	20×3년
가중평균법적용 기말재고자산	₩10,000	₩11,000	₩12,000
선입선출법적용 기말재고자산	12,000	14,000	16,000
회계정책 변경 전 매출원가	₩50,000	₩60,000	₩70,000
회계정책 변경 전 기말이익잉여금	100,000	300,000	600,000

	매출원가	기말이익잉여금		매출원가	기말이익잉여금
①	₩61,000	₩607,000	②	₩61,000	₩604,000
③	₩69,000	₩599,000	④	₩69,000	₩604,000
⑤	₩71,000	₩599,000			

6. ㈜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한국이 발행한 채권을 ₩927,910에 취득하였다. 동 채권의 액면금액은 ₩1,000,000, 표시이자율은 연 10%(매년 말 지급)이며,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었다. 20×1년 말 동 채권의 이자수취 후 공정가치는 ₩990,000이며, ㈜세무는 20×2년 3월 31일에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1,020,000에 동 채권을 처분하였다. ㈜세무의 동 채권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채권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없다.)

①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은 ₩990,000으로 동일하다.

②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1년 당기순이익은 ₩162,090 증가한다.

③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1년 총포괄손익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④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30,000 증가한다.

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75,741 증가한다.

7. ㈜세무리스는 20×1년 1월 1일에 ㈜한국과 해지불능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리스자산 :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감가상각
○ 리스기간 : 리스기간개시일(20×1년 1월 1일)부터 5년
○ 연간리스료 : 매년 12월 31일 지급
○ 리스개설직접원가 : ㈜세무리스와 ㈜한국 모두 없음
○ 내재이자율 : 연 10%, ㈜한국은 ㈜세무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음
○ ㈜세무리스는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채권으로 ₩19,016,090(리스기간개시일의 리스자산 공정가치와 동일)을 인식함
○ ㈜한국은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자산으로 ₩18,991,254를 인식함
○ 특약사항 : 리스기간 종료시 반환조건이며, ㈜한국은 리스기간 종료시 예상 잔존가치 ₩100,000 중 일부를 보증함

㈜한국이 동 리스와 관련하여 보증한 잔존가치는? (단, 기간 5년, 할인율 연 10%일 때, 단위금액 ₩1의 현재가치 계수는 0.6209,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계수는 3.7908이다.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① ₩18,955 ② ₩40,000 ③ ₩60,000 ④ ₩81,045 ⑤ ₩100,000

8. ㈜세무는 20×3년 1월 1일 종업원 40명에게 1인당 주식선택권 40개씩 부여하였다. 동 주식선택권은 종업원이 향후 3년 동안 ㈜세무에 근무해야 가득된다. 20×3년 1월 1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300으로 추정되었으며, 행사가격은 단위당 ₩600이다. 각 연도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와 퇴직 종업원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말	주식선택권 단위당 공정가치	실제 퇴직자	추가 퇴직 예상자
20×3	₩300	2명	6명
20×4	400	4	2
20×5	500	1	-

20×6년 초에 가득된 주식선택권의 50%가 행사되어 ㈜세무가 주식(단위당 액면금액 ₩500)을 교부하였다면, 주식선택권 행사로 인해 증가되는 자본은?

① ₩66,000 ② ₩198,000 ③ ₩264,000 ④ ₩330,000 ⑤ ₩396,000

9. 전환사채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환사채 발행자는 재무상태표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표시한다.

② 전환조건이 변경되면 발행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만기 이전에 지분증권으로 전환하는 권리인 전환권 특성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를 만기보유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④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다.

⑤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를 수정한다.

10.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원가가 존재하는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서 동 거래원가를 조정해야 한다. 이때, 거래원가는 운송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② 부채의 현행원가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한다.

③ 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취득의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그 외 대가의 공정가치를 의미한다.

④ 자산이나 부채의 교환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이다.

⑤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이 관측가능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11. ㈜세무의 20×6년 당기순이익은 ₩2,450,000이며, 기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800주이다. 20×6년 9월 1일 주주우선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300주를 유상증자하였다. 이때 발행금액은 주당 ₩40,000이며, 유상증자 직전 종가는 주당 ₩60,000이다. ㈜세무의 20×6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① ₩1,167 ② ₩1,225 ③ ₩1,250 ④ ₩1,289 ⑤ ₩1,321

12. 20×5년에 설립한 ㈜세무는 ㈜한국과 건설기간 3년, 계약금액 ₩1,000,000인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시점인 20×7년까지는 동 공사만 진행하였다. ㈜세무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세무가 20×6년과 20×7년에 인식할 당기 공사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단, 취득한 건설자재는 동 건설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5년	20×6년	20×7년
당기 건설자재 취득원가	₩90,000	₩100,000	₩50,000
기말 미사용 건설자재	10,000	40,000	40,000
당기 건설노무원가	120,000	140,000	250,000
당기 건설장비 감가상각비	10,000	12,000	18,000
추정총계약원가	700,000	720,000	-

	20×6년	20×7년		20×6년	20×7년		20×6년	20×7년
①	₩74,111	₩69,222	②	₩74,111	₩85,889	③	₩78,000	₩82,000
④	₩78,000	₩84,000	⑤	₩78,000	₩85,889			

13. ㈜세무는 ㈜한국이 발행한 다음의 사채를 만기보유 목적으로 20×6년 10월 1일에 취득하였다.

액면금액	₩1,000,000	발행일	20×6년 7월 1일
표시이자율	연 8%	만기일	20×9년 6월 30일
발행일 유효이자율	연 10%	이자지급일	매년 6월 30일

사채의 취득금액에는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채 취득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8%이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세무가 20×6년에 인식할 이자수익 금액과 20×6년 말 인식할 금융자산 장부금액의 합계액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0%	8%	10%
1	0.9259	0.9091	0.9259	0.9091
2	0.8573	0.8264	1.7833	1.7355
3	0.7938	0.7513	2.5771	2.4869

① ₩981,521 ② ₩977,765 ③ ₩990,765 ④ ₩1,020,000 ⑤ ₩1,023,756

14. ㈜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10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에 취득하고 재평가모형(매년 말 재평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정가치의 하락은 자산손상과 무관하다.)

연도	20×1년 말	20×2년 말	20×3년 말
공정가치	₩100,000	₩63,000	₩39,000

① 20×2년도 감가상각비는 ₩25,000이다.

② 동 거래로 인한 20×2년도 이익잉여금의 당기 변동분은 ₩(-)20,000이다.

③ 20×2년 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0이다.

④ 20×3년 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3,000이다.

⑤ 동 거래로 인한 20×3년도 이익잉여금의 당기 변동분은 ₩(-)21,000이다.

15.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인식시점 이후에 어떠한 금융상품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②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 중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은 금융자산이다.

③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④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를 경우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

⑤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다.

16. 지분법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한다.

②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기업은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다.

④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기업은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⑤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 기업은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 지분을 재측정한다.

17. ㈜세무는 20×3년부터 판매한 제품의 결함에 대해 1년간 무상보증을 해주고 있으며, 판매한 제품 중 5%의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무는 제품보증활동에 관한 수익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제품보증비용을 인식한다. 개당 보증비용은 20×3년 말과 20×4년 말에 각각 ₩1,200과 ₩1,500으로 추정되었다. 판매량과 보증비용 지출액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4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제품보증충당부채는? (단, 모든 보증활동은 현금지출로 이루어진다.)

연도	판매량	보증비용 지출액
20×3년	600개	₩15,000
20×4년	800개	₩17,000(전기 판매분) ₩30,000(당기 판매분)

① ₩26,000 ② ₩30,000 ③ ₩34,000 ④ ₩37,500 ⑤ ₩40,500

18. 20×1년 말 ㈜세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단, 사용이 제한된 것은 없다.)

(1) ㈜세무의 실사 및 조회자료

○ 소액현금: ₩100,000
○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채이자표: ₩200,000
○ 수입인지: ₩100,000
○ 양도성예금증서(만기 20×2년 5월 31일): ₩200,000
○ 타인발행당좌수표: ₩100,000
○ 우표: ₩100,000
○ 차용증서: ₩300,000
○ 은행이 발급한 당좌예금잔액증명서 금액: ₩700,000

(2) ㈜세무와 은행 간 당좌예금잔액 차이 원인

○ 은행이 ㈜세무에 통보하지 않은 매출채권 추심액: ₩50,000
○ 은행이 ㈜세무에 통보하지 않은 은행수수료: ₩100,000
○ ㈜세무가 당해연도 발행했지만 은행에서 미인출된 수표: ₩200,000
○ 마감시간 후 입금으로 인한 은행미기입예금: ₩300,000

① ₩1,050,000 ② ₩1,200,000 ③ ₩1,300,000 ④ ₩1,350,000 ⑤ ₩1,400,000

19. ㈜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투자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2,0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 공정가치모형 적용)을 구입하였다. 20×2년 7월 1일부터 ㈜세무는 동 건물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세무는 동 건물을 잔여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잔존가치 ₩0)하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공정가치의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동 거래가 20×2년도 ㈜세무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구 분	20×1년 말	20×2년 7월 1일	20×2년 말
공정가치	₩2,200,000	₩2,400,000	₩2,500,000

① ₩480,000 감소 ② ₩280,000 감소 ③ ₩200,000 증가
④ ₩300,000 증가 ⑤ ₩580,000 증가

20. 차입원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면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되,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기간 내에 발생한 일시적 투자수익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

②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④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21. ㈜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200,000, 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사채(매년 말에 액면금액 ₩400,000씩을 상환하는 연속상환사채)를 발행하였다. 20×1년 12월 31일 사채의 장부금액은? (단, 사채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연 6%,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6%	5%	6%
1	0.9524	0.9434	0.9524	0.9434
2	0.9070	0.8900	1.8594	1.8334
3	0.8638	0.8396	2.7232	2.6730

① ₩678,196 ② ₩778,196 ③ ₩788,888 ④ ₩795,888 ⑤ ₩800,000

22.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한 원재료 가격이 현행대체원가 보다 하락한다면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②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④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⑤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불리우며,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 및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23. ㈜세무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00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 원가모형적용)에 취득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였다. 매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다. 동 거래가 20×3년도 ㈜세무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구 분	20×1년 말	20×2년 말	20×3년 말
회수가능액	₩700,000	₩420,000	₩580,000

① ₩120,000 감소 ② ₩20,000 감소 ③ ₩20,000 증가
④ ₩120,000 증가 ⑤ ₩160,000 증가

24. ㈜세무의 20×1년 기초재고자산은 ₩200,000이고 당기 매입액은 ₩1,000,000이다. ㈜세무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12월 31일 실사를 통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300,000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추가고려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세무의 20×1년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20×1년 6월 1일에 ㈜한국으로부터 판매를 수탁받은 상품(원가 ₩120,000) 중 원가 ₩20,000이 판매되었고, 나머지는 기말 현재 ㈜세무의 창고에 보관 중이며 기말실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20×1년 12월 21일에 ㈜민국으로부터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송장가격: ₩60,000)이 20×1년 12월 31일 현재 선박으로 운송 중에 있다. 이 상품은 20×2년 1월 8일에 도착한다.
○ 20×1년 12월 30일에 반품률이 높은 상품(원가 ₩50,000)을 ㈜대한에 판매·인도하였다. 해당 상품의 경우 반품률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반품기한은 20×2년 1월 10일까지이다.

① ₩690,000 ② ₩770,000 ③ ₩790,000 ④ ₩870,000 ⑤ ₩890,000

25. ㈜세무는 신제품 개발활동으로 연구개발비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 차입원가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다. 20×1년은 연구단계이고, 20×2년은 개발단계(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함)에 속하는데, 20×2년 7월 1일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제품생산에 사용되었다. 무형자산(개발비)은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월할상각)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2년 12월 31일 무형자산(개발비)의 장부금액은?

내역	20×1년 1월 1일～ 20×1년 12월 31일	20×2년 1월 1일～ 20×2년 6월 30일
연구원 급여	₩40,000	₩30,000
시험용 원재료 사용액	25,000	20,000
시험용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10,000	5,000
차입원가	5,000	5,000

① ₩49,500 ② ₩50,000 ③ ₩54,000 ④ ₩55,000 ⑤ ₩60,000

26. ㈜세무는 단일 제품A를 생산·판매하며, 관련범위 내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10,000단위이다. ㈜세무는 현재 제품A 7,500단위를 생산하여 단위당 판매가격 ₩400으로 정규시장에 모두 판매한다. 최근 ㈜세무는 ㈜한국으로부터 단위당 가격 ₩350에 제품A 3,00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한국의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하여야 하며, 특별주문 수락시 정규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하여야 한다. 제품A의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8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는 ₩12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0이며, 조업도 수준에 따른 총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다.

조업도 수준	총제조간접원가
최대생산능력의 55%	₩1,755,000
최대생산능력의 65%	1,865,000
최대생산능력의 75%	1,975,000
최대생산능력의 80%	2,030,000

㈜세무가 ㈜한국의 특별주문을 수락한다면, 증가 또는 감소할 영업이익은? (단, 변동제조간접원가의 추정은 고저점법을 이용한다.)

① ₩30,000 감소 ② ₩45,000 감소 ③ ₩75,000 증가

④ ₩90,000 증가 ⑤ ₩120,000 증가

27. ㈜세무는 제품A(공헌이익률 50%)와 제품B(공헌이익률 30%) 두 제품만을 생산·판매하는데, 두 제품 간 매출액의 상대적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세무의 20×1년 매출액 총액은 ₩7,000,000, 총고정비는 ₩1,750,000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예상 영업이익은 ₩700,000으로 설정하였다. ㈜세무가 20×1년의 예상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A와 제품B의 매출액은?

	제품A	제품B		제품A	제품B
①	₩700,000	₩6,300,000	②	₩840,000	₩6,160,000
③	₩1,750,000	₩5,250,000	④	₩2,800,000	₩4,200,000
⑤	₩3,150,000	₩3,850,000			

28. ㈜세무는 20×1년에 제품A를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제품A의 20×1년 생산량과 판매량은 일치하며, 기초 및 기말재공품은 없다. 제품A는 노동집약적 방법 또는 자본집약적 방법으로 생산 가능하며, 생산방법에 따라 품질과 판매가격의 차이는 없다. 각 생산방법에 의한 예상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노동집약적 생산방법	자본집약적 생산방법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00	₩250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	₩2,100,000	₩3,100,000

㈜세무는 제품A 판매가격을 단위당 ₩600으로 책정하고, 제조원가 외에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50과 연간 고정판매관리비 ₩1,400,000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세무가 20×1년에 노동집약적 생산방법을 택할 경우 손익분기점 판매량(A)과 두 생산방법 간에 영업이익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판매량(B)은 각각 얼마인가?

	(A)	(B)		(A)	(B)		(A)	(B)
①	8,400단위	20,000단위	②	10,000단위	15,000단위	③	10,000단위	20,000단위
④	14,000단위	15,000단위	⑤	14,000단위	20,000단위			

29. ㈜세무는 단일 제품A를 생산하는데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70,000단위이며, 20×1년에 제품A를 45,000단위 판매할 계획이다.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제품A 1단위 생산에 4kg 투입)되며, 제조과정에서 공손과 감손 등으로 인한 물량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20×1년 초 실제재고와 20×1년 말 목표재고는 다음과 같다.

	20×1년 초	20×1년 말
원재료	4,000kg	5,000kg
재공품	1,500단위(완성도 60%)	1,800단위(완성도 30%)
제 품	1,200단위	1,400단위

재공품 계산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세무가 20×1년에 구입해야 하는 원재료(kg)는?

① 180,000kg ② 182,000kg ③ 183,000kg ④ 184,000kg ⑤ 185,600kg

30. ㈜세무는 전부원가계산방법을 채택하여 단일 제품A를 생산·판매하며, 재고자산 계산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20×1년 제품A의 생산·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수량	재고금액
기초제품	1,500단위	₩100,000(고정제조간접원가 ₩45,000 포함)
당기완성품	24,000단위	
당기판매	23,500단위	
기말제품	2,000단위	₩150,000(고정제조간접원가 포함)

20×1년 재공품의 기초와 기말재고는 없으며, 고정제조간접원가는 ₩840,000, 고정판매관리비는 ₩675,000이다. ㈜세무의 20×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745,000일 경우,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기말제품재고액은?

	영업이익	기말제품재고액		영업이익	기말제품재고액
①	₩710,000	₩80,000	②	₩710,000	₩90,000
③	₩720,000	₩80,000	④	₩720,000	₩90,000
⑤	₩730,000	₩90,000			

31. 원가-조업도-이익 분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답지항에서 변동되는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계단원가(준고정비)가 존재하면 손익분기점은 반드시 계단 수(구간 수)만큼 존재한다.
② 법인세율이 증가하면 같은 세후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이 많아진다.
③ 단위당 변동원가가 작아지면 손익분기점이 낮아진다.
④ 공헌이익률이 증가하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이 작아진다.
⑤ 법인세율이 증가해도 손익분기점은 바뀌지 않는다.

32. ㈜세무의 20×1년 5월 중 자료는 다음과 같다.

	5월 1일	5월 31일
재 공 품	₩30,000	₩25,000
제 품	20,000	10,000

5월 중 기초원가(prime cost)는 ₩325,000이고, 가공원가(conversion cost)가 직접재료원가의 40%이며, 제조간접원가는 ₩25,000이다. ㈜세무의 5월 매출원가는?

① ₩320,000 ② ₩345,000 ③ ₩350,000 ④ ₩360,000 ⑤ ₩365,000

33. ㈜세무는 기계시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는 정상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한다. 20×1년에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787,500이 발생되었고, 기계시간당 ₩25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 결과 ₩37,500만큼 과대배부 되었다. 20×1년 실제조업도가 예정조업도의 110%인 경우, ㈜세무의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은?

① ₩715,000 ② ₩725,000 ③ ₩750,000 ④ ₩800,000 ⑤ ₩825,000

34. ㈜세무는 제품A와 제품B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두 제품의 단위당 연간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 분	제품A	제품B
판매가격	₩200,000	₩240,000
직접재료원가	85,000	95,000
직접노무원가	10,000	10,000
변동제조간접원가(기계시간당 ₩5,000)	20,000	30,000
변동판매관리비	5,000	15,000
고정제조간접원가	15,000	25,000
고정판매관리비	30,000	20,000
단위당 원가 계	165,000	195,000

㈜세무가 제품A와 제품B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계시간은 연간 3,700시간이다. ㈜세무가 제품을 외부로 판매할 경우 시장의 제한은 없으나, 연간 외부 최대 수요량은 제품A 700개, 제품B 400개이다. ㈜세무가 영업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품배합은?

	제품A	제품B		제품A	제품B		제품A	제품B
①	700개	100개	②	700개	150개	③	700개	400개
④	250개	400개	⑤	325개	400개			

35. ㈜세무는 개별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제조지시서#1은 전기부터 작업이 시작되었고, 제조지시서#2와 #3은 당기 초에 착수되었다. 당기 중 제조지시서#1과 #2는 완성되었으나, 당기말 현재 제조지시서#3은 미완성이다. 당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에 근거하여 배부한다. 당기에 제조지시서#1 제품은 전량 판매되었고, 제조지시서#2 제품은 전량 재고로 남아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1	#2	#3	합 계
기초금액	₩450	-	-	
[당기투입액]				
직접재료원가	₩6,000	₩2,500	₩( )	₩10,000
직접노무원가	500	( )	( )	1,000
제조간접원가	( )	1,000	( )	4,000

①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2,250이다.
② 당기총제조원가는 ₩15,000이다.
③ 기초재공품은 ₩450이다.
④ 기말재공품은 ₩2,750이다.
⑤ 당기매출원가는 ₩8,950이다.

36. ㈜세무는 단일 제품C를 생산하며, 변동원가계산을 적용한다. 20×2년 제품C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1,000개로 동일하고, 기초 및 기말재공품은 없다. 20×2년 제품C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수익발생과 현금유입 시점은 동일하며 원가(비용)발생과 현금유출 시점도 동일하다.

○ 단위당 판매가격	₩6,000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2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600	
○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	242,000	(기계 감가상각비 ₩72,000 포함)
○ 연간 고정판매관리비	206,800	(매장건물 감가상각비 ₩64,800 포함)
○ 법인세율	25%	
○ 기계와 매장건물은 20×0년에 취득하였다.		

㈜세무의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량(A)과 판매량이 1,000개인 경우의 세후영업이익(B)은?

	(A)	(B)		(A)	(B)
①	222단위	₩563,400	②	444단위	₩563,400
③	222단위	₩666,000	④	444단위	₩666,000
⑤	666단위	₩666,000			

37. ㈜세무는 단일 제품A를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계산방법(선입선출법 적용)을 사용한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 제품A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세무의 제품A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단, 생산과정 중 감손이나 공손 등 물량손실은 없다.)

구 분	물 량(완성도)
기초재공품	100개 (30%)
당기착수품	2,100개
당기완성품	( )개
기말재공품	200개 (40%)

구 분	직접재료원가	가공원가
기초재공품	₩28,000	₩25,000
당기발생원가	630,000	205,000
계	₩658,000	₩230,000

① ₩384 ② ₩390 ③ ₩404 ④ ₩410 ⑤ ₩420

38. 부문별 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의 배부순서가 달라져도 배부금액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②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서비스 제공을 한 방향만 고려하여 그 방향에 따라 보조부문의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부한다.
③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상호배부를 모든 방향으로 반영한다.
④ 단계배부법은 한 번 배부된 보조부문의 원가는 원래 배부한 보조부문에는 다시 배부하지 않고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⑤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에 주고받는 서비스 수수관계를 전부 무시한다.

39. ㈜세무는 분권화된 A사업부와 B사업부가 있다. A사업부는 반제품M을 최대 3,000단위 생산할 수 있으며, 현재 단위당 판매가격 ₩600으로 2,850단위를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 B사업부는 A사업부에 반제품M 300단위를 요청하였다. A사업부 반제품M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변동판매관리비는 ₩0)이며, 사내대체를 하여도 외부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하지 않는다. A사업부는 사내대체를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하여야 하며, 사내대체 수락시 외부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하여야 한다. A사업부가 사내대체 전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① ₩350 ② ₩400 ③ ₩450 ④ ₩500 ⑤ ₩550

40. 결합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량기준법은 모든 연산품의 물량 단위당 결합원가 배부액이 같아진다.
② 분리점판매가치법(상대적 판매가치법)은 분리점에서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
③ 균등이익률법은 추가가공 후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
④ 순실현가치법은 추가가공 후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
⑤ 균등이익률법과 순실현가치법은 추가가공을 고려한 방법이다.

행정소송법

41.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② 반사적 이익의 침해
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
④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42.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중 일부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부취소되는 부분은 분리가능하고 명확히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일정기간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도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43. 취소소송의 제기 및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를 심리·판결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이면 중복제소가 금지된다.
④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소가 제기되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이 가능해진다.

44.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ㄴ. 공법상 신분·지위 확인소송
ㄷ. 거부처분에 대한 가처분소송
ㄹ. 신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취소소송
ㅁ.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ㅂ.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금지를 구하는 소송

① ㄱ, ㄴ, ㅁ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 ㄴ, ㄹ, ㅁ ⑤ ㄹ, ㅁ, ㅂ

45.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①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제기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소송

②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압류처분 후에 압류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제기하는 압류처분 취소소송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사는 주민이 제기하는 당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허가처분 취소소송

④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이 제기하는 원자로시설부지 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

⑤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소송

46. 판결의 효력인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② 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하는 거부처분은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재처분에 해당할 수 없다.

③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④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⑤ 거부처분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47.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효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에 포함된다.

②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③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④ 작위의무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에 포함된다.

⑤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요건으로서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48. 판례상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관청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② 과세관청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과세관청은 처분 당시 제시했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⑤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이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49. 행정소송상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예외이다.
② 법원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50.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④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⑤ 법원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

51. 판례상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을 인정한 것은?

① 가중 제재처분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②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후 새로 실시된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⑤ 행정대집행이 실행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5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

③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당초 신청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⑤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는 미칠 수 없다.

53.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판관할	ㄴ. 직권심리
ㄷ. 사정판결	ㄹ. 행정청의 소송참가
ㅁ.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54. **항고소송의 소송요건 흠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고는 흠결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원고적격의 흠결로 인한 소송판결은 종국판결의 일종이다.

③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④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도 처분이 위법하면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본안심리 중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소송요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55.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상회복청구소송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경우라도 관련청구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도 가능하다.

③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병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야 한다.

⑤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관련청구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56.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②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③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④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⑤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피고가 된다.

57.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송요건은 불필요한 소송을 배제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이 있다.

② 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④ 법원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58. 판례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국가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ㄱ)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ㄴ)을 의미한다.**

① ㄱ: 당사자소송, ㄴ: 당사자소송
② ㄱ: 취소소송, ㄴ: 취소소송
③ ㄱ: 당사자소송, ㄴ: 민사소송
④ ㄱ: 취소소송, ㄴ: 당사자소송
⑤ ㄱ: 당사자소송, ㄴ: 취소소송

59.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처분이다.

②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처분이 아니다.

③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와 사용자에게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지만 권고이어서 처분이 아니다.

60.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세처분 후 감액경정결정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②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③ 과세처분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61.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한 날이 경과되면 제소기간이 도과된다.

②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신청일부터 기산한다.

③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④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적용된다.

⑤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63.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ㄱ)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ㄴ)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① ㄱ: 판결시, ㄴ: 처분시 ② ㄱ: 처분시, ㄴ: 신청시 ③ ㄱ: 신청시, ㄴ: 처분시

④ ㄱ: 처분시, ㄴ: 판결시 ⑤ ㄱ: 판결시, ㄴ: 판결시

64.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경우 적용된다.

②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가 신청해야 한다.

③ 변경되는 청구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법원은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 있으면 종전의 소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6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의 개념은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하여 거부처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③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⑤ 부작위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제소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66. 판례상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 소유자의 건물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②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③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계획입안권자에 대한 도시계획입안 신청

④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납세자가 제기한 경정청구

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시설계획결정권자에 대한 도시시설계획변경 신청

67.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① 불이익처분의 상대방

②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

③ 생태·자연도 1등급이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경우, 그 등급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인근 주민

④ A 국가기관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고, 조치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그 조치요구의 상대방인 B 국가기관

⑤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

6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행정강제 ② 국가배상 ③ 즉시강제 ④ 직접강제 ⑤ 간접강제

69.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③ 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관련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⑤ 주로 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며, 권력분립의 원칙상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70.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③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사정판결을 하는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 그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⑤ 사정판결을 하는 법원은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71.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만, 재처분의무에 따른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규정이 준용된다.

③ 가처분이 이용될 수 있어, 집행정지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④ 취소소송 대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취소소송에 비하여 대상적격이 넓게 인정된다.

⑤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

72. 행정소송법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ㄱ)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ㄴ)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① ㄱ: 기각, ㄴ: 인용

② ㄱ: 인용, ㄴ: 인용

③ ㄱ: 기각, ㄴ: 각하 또는 기각

④ ㄱ: 각하, ㄴ: 각하 또는 기각

⑤ ㄱ: 인용, ㄴ: 각하 또는 기각

73.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행정지결정사건은 본안이 계속된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②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③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정지는 인정된다.

④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주장·소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74.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③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소송결과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참가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소송참가를 신청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75.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③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④ 민중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기관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포함한다.

76. 행정소송상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기판력은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친다.

④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⑤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77.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① 인용판결, 집행정지결정　　② 각하판결, 기각판결

③ 인용판결, 기각판결　　④ 각하판결, 인용판결

⑤ 기각판결, 집행정지결정

78.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ㄴ. 사실심의 변론개시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ㄷ. 법원은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ㄹ.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소변경 신청이 있은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9.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행정대집행법상 제1차 계고처분 후 반복된 제2차 계고처분

② 지목변경신청 거부

③ 행정규칙을 근거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④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제외 결정

⑤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80.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상 대법원이 이를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① 법무부장관 ② 법제처장 ③ 국세청장

④ 기획재정부장관 ⑤ 행정자치부장관